

목동윤슬자이 오피스텔 분양광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6.09.03.)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6.09.01,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6.09.01,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개군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군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군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목동윤슬자이 홈페이지(<https://xi.co.kr/MDX>)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시	2026.09.08.(화)	2026.09.11.(금) 16:00 이후	2026.09.13.(일) ~ 09.14.(월) 10:00~17: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목동윤슬자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						
* 단,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는 본인 인증 절차 상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위 5종 인증서를 통한 청약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21414호(2026.09.01.)로 분양신고 처리 알림 ■ 본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건축과-신축허가-7호(2024.04.30.)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4, 924-3, 924-5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16,415.7000㎡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231,478.8855㎡ • 공급규모 : 지하 6층~지상 48층, 3개동, 오피스텔(지상 9층~지상 48층) 총 651실 • 주차대수 : 오피스텔 1,206대(실당 1.85대 / 근린생활시설 제외) • 건축물 층별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 나목 2)의 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지하 6층~ 지하 4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상 2층	지하 3층~ 지하 1층	지하 3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8층	지상 9층~ 지상 22층	지상 23층	지상 24층~ 지상 48층
주차장	창고시설	업무시설 (공공기여)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오피스텔 전용)	오피스텔	피난안전구역	오피스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 상대보호구역

■ 내진설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은 진도 등급 Ⅶ

■ 준공예정일 : 2030년 10월 예정 (향후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 입주예정일 : 2030년 12월 예정 (향후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 요구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본 사업은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와 시행사 겸 시행위탁자인 (주)아이코닉 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영부동산신탁(주)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 실, m²)

군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1군	115A	118	115.8627	39.1012	154.9639	86.8354	241.7993	17.1043
2군	114B	208	114.2462	37.1245	151.3707	85.6240	236.9947	16.8656
3군	114C	118	114.2570	37.3726	151.6296	85.6320	237.2616	16.8672
4군	117C-T1	45	117.8878	39.0471	156.9349	88.3532	245.2881	17.4032
	118C-T2	45	118.6090	39.2363	157.8453	88.8937	246.7390	17.5097
	119A-T1	45	119.6215	40.6535	160.2750	89.6526	249.9276	17.6592
	120A-T2	30	120.2147	40.9649	161.1796	90.0972	251.2768	17.7467
	120A-T3	15	120.2147	40.9649	161.1796	90.0972	251.2768	17.7467
5군	198CD	8	198.0675	69.4911	267.5586	148.4454	416.0040	29.2398
	202BD	9	202.3177	69.7384	272.0561	151.6308	423.6869	29.8673
	203AD	10	203.3496	71.8224	275.1720	152.4042	427.5762	30.0196
계		651	-					

• 상기 면적은 건축허가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오피스텔의 호실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도서의 합산면적과 분양면적의 합산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호실별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공용면적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 호실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m²) × 0.3025 또는 면적(m²) ÷ 3.3058)

※ 호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서울특별시 양천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 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오피스텔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 추첨의 경우 거주자 우선 당첨자와 일반공급 당첨자를 포함하며 군별로 접수를 받아 군 내에서 타입·동·호수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군	타입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 분양 (20%)	일반공급	합계	
1군	115A	118	23	95	118	※ 분양 신고일(2026.09.01, 광고일과 다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법인
2군	114B	208	41	167	208	
3군	114C	118	23	95	118	
4군	117C-T1	45	36	144	180	
	118C-T2	45				
	119A-T1	45				
	120A-T2	30				
	120A-T3	15				
5군	198CD	8	5	22	27	
	202BD	9				
	203AD	10				
합계		651	128	523	651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실, 원)

군	타입	공급 호실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3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12-31	2027-04-01	2027-11-01	2028-06-01	2029-03-02	2029-09-03	2030-03-04	

1군	115A	118	최저가	1,369,773,440	1,316,569,600	131,656,960	2,818,000,000	50,000,000	150,000,000	81,800,000	281,800,000	281,800,000	281,800,000	281,800,000	281,800,000	281,800,000	845,400,000
			최고가	1,625,451,520	1,562,316,800	156,231,680	3,344,000,000	50,000,000	150,000,000	134,400,000	334,400,000	334,400,000	334,400,000	334,400,000	334,400,000	334,400,000	1,003,200,000
2군	114B	208	최저가	1,195,756,800	1,149,312,000	114,931,200	2,460,000,000	50,000,000	150,000,000	46,000,000	246,000,000	246,000,000	246,000,000	246,000,000	246,000,000	246,000,000	738,000,000
			최고가	1,547,678,720	1,487,564,800	148,756,480	3,184,000,000	50,000,000	150,000,000	118,400,000	318,400,000	318,400,000	318,400,000	318,400,000	318,400,000	318,400,000	955,200,000
3군	114C	118	최저가	1,389,216,640	1,335,257,600	133,525,760	2,858,000,000	50,000,000	150,000,000	85,800,000	285,800,000	285,800,000	285,800,000	285,800,000	285,800,000	285,800,000	857,400,000
			최고가	1,625,451,520	1,562,316,800	156,231,680	3,344,000,000	50,000,000	150,000,000	134,400,000	334,400,000	334,400,000	334,400,000	334,400,000	334,400,000	334,400,000	1,003,200,000
4군	117C-T1	45	최저가	1,263,808,000	1,214,720,000	121,472,000	2,600,000,000	50,000,000	150,000,000	60,000,000	260,000,000	260,000,000	260,000,000	260,000,000	260,000,000	260,000,000	780,000,000
			최고가	1,526,291,200	1,467,008,000	146,700,800	3,140,000,000	50,000,000	150,000,000	1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942,000,000
	118C-T2	45	최저가	1,239,504,000	1,191,360,000	119,136,000	2,550,000,000	50,000,000	150,000,000	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765,000,000
			최고가	1,526,291,200	1,467,008,000	146,700,800	3,140,000,000	50,000,000	150,000,000	1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942,000,000
	119A-T1	45	최저가	1,239,504,000	1,191,360,000	119,136,000	2,550,000,000	50,000,000	150,000,000	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765,000,000
			최고가	1,526,291,200	1,467,008,000	146,700,800	3,140,000,000	50,000,000	150,000,000	1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942,000,000
	120A-T2	30	최저가	1,370,745,600	1,317,504,000	131,750,400	2,820,000,000	50,000,000	150,000,000	82,000,000	282,000,000	282,000,000	282,000,000	282,000,000	282,000,000	282,000,000	846,000,000
			최고가	1,526,291,200	1,467,008,000	146,700,800	3,140,000,000	50,000,000	150,000,000	1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314,000,000	942,000,000
	120A-T3	15	최저가	1,239,504,000	1,191,360,000	119,136,000	2,550,000,000	50,000,000	150,000,000	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255,000,000	765,000,000
			최고가	1,365,884,800	1,312,832,000	131,283,200	2,810,000,000	50,000,000	150,000,000	81,000,000	281,000,000	281,000,000	281,000,000	281,000,000	281,000,000	281,000,000	843,000,000
5군	198CD	8	최저가	3,033,139,200	2,915,328,000	291,532,800	6,240,000,000	50,000,000	150,000,000	424,000,000	624,000,000	624,000,000	624,000,000	624,000,000	624,000,000	624,000,000	1,872,000,000
			최고가	3,349,091,200	3,219,008,000	321,900,800	6,890,000,000	50,000,000	150,000,000	489,000,000	689,000,000	689,000,000	689,000,000	689,000,000	689,000,000	689,000,000	2,067,000,000
	202BD	9	최저가	2,692,883,200	2,588,288,000	258,828,800	5,540,000,000	50,000,000	150,000,000	354,000,000	554,000,000	554,000,000	554,000,000	554,000,000	554,000,000	554,000,000	1,662,000,000
			최고가	3,081,747,200	2,962,048,000	296,204,800	6,340,000,000	50,000,000	150,000,000	434,000,000	634,000,000	634,000,000	634,000,000	634,000,000	634,000,000	634,000,000	1,902,000,000
	203AD	10	최저가	2,984,531,200	2,868,608,000	286,860,800	6,140,000,000	50,000,000	150,000,000	414,000,000	614,000,000	614,000,000	614,000,000	614,000,000	614,000,000	614,000,000	1,842,000,000
			최고가	3,300,483,200	3,172,288,000	317,228,800	6,790,000,000	50,000,000	150,000,000	479,000,000	679,000,000	679,000,000	679,000,000	679,000,000	679,000,000	679,000,000	2,037,000,000

- 상기 분양금액은 각 타입별, 동별, 호실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책정된 금액으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각 호실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타입별 지상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통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며, 호실별 설계도서는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공공기여), 창고시설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지지분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결과에 따른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의 운영 및 이용은 입주 시 배포되는 「오피스텔 관리규약」 중 '부대시설 및 서비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며,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또는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방법, 이용기준 및 이용 가능 범위 등이 변경되거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며, 본 오피스텔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계약금을 납부하오니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의 회차별, 중도금 납부액 및 납부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발생 여부, 항공소음, 수증기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을 호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주차장 면적은 용도별 계획주차대수 비율로 안분한 후 오피스텔의 호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한 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법인 계약, 다호실 계약 등)등에 따라 대출 조건과 취급 등이 제한(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이 적을 경우 분양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기재된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2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 분양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6.09.03.**)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외국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개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개군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군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6.09.08.(화) 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2026.09.11.(금) 16:00 이후	2026.09.13.(일) ~ 09.14.(월) 10:00~17: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군)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목동윤슬자이 건본주택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 등 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 가능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 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 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처 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1·2·3·4군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5군	10,000,000원 (금일천만원)	청약신청은 1인당 1개군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군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 가능 은행 전 지점)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구분	구비사항		
일반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정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 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는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09.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환불 신청한 환불계좌가 환불 오류 등의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타입·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군별 900%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하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6.09.11.(금)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 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오피스텔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합니다.
기타사항	• 군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 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정 당첨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사유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약자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계좌 오류 등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청약금 환불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6.09.13.(일) ~ 09.14.(월)	10:00~17: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목동윤슬자이 건본주택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납부는 불가하며,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 등은 현장에서 현금납부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반드시 확인 후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납부한 분양대금 또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차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14-82105	신영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 (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동·호수 미기재 입금 시 입금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3차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계약체결 시 호실별로 가상 계좌 부여 예정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동·호수, 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계약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 입금자명을 '101-10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2·3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체결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이며, 호실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 : 하나은행 231-910014-82105, 예금주 : 신영부동산신탁(주))로 이체되어, 신영부동산신탁(주)에 의하여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과오납 발생 시 납부 내역 확인 후 환불 처리 예정이며, 환불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고, 사업주체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위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자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입금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주민등록등본 1통,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인지세 납부 수입인지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 예) 공급계약서 상의 분양대금 10억원을 초과하는 인지세는 35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17만 5천원씩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1통) ▪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도장, 신분증 지참 ▪ 인지세 납부 수입인지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 예) 공급계약서 상의 분양대금 10억원을 초과하는 인지세는 35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17만 5천원씩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계약 시 (배우자 포함 본인 외 전부)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 등)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공통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건본주택 내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신청자의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09.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수익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 및 해약 조치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관할 관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청약 당첨자 본인 명의로만 체결 가능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제3자를 포함한 공동명의 계약 및 계약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샘플 호실, 각 타입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수증기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단지 명칭, 동·호수,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 색채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 및 각종 홍보물 및 영상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 및 영상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분양광고일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층수의 증감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정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에 대하여는 면적, 분양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과태료 등의 대납이나,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인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 금액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최초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원본은 계약서에 첨부하고, 사본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공급계약(전매포함) 체결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명,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의 표기,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시기와 본단지의 각용도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공공기여), 창고시설)의 입주(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계약에 전자서명함으로써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을 전자서명방식으로 선택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참조). 또한, 계약자가 전자서명한 본 계약서(전자문서)는 계약서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전자서명이 완료된 전자계약문서에는 타임스탬프가 적용되어 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시공사가 지정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동안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며, 필요 시 보관기간 동안 보관 사실·시점 등에 대한 증명서(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중도금 대출 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대출조건(금리 등) 및 금융기관 선정 등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일체 관여할 수 없으니 이를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 개시일의 전일(이하 "대납기간")까지 계약자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연 2.5%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 2.5%의 고정금리에 해당하는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기간 동안 대납한 후 계약자가 잔금지급시 사업주체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대납기간의 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실제 적용금리가 연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대납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실제 적용금리에 따라 계약자가 이자를 부담합니다.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 등으로 중도금을 자납하는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대출이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금(2차 및 3차 계약금 포함)을 완납한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2차 및 3차 계약금 포함)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신청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제한 등) 및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대출상품의 종류, 금융 정책, 중도금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개인의 사정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불가 또는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 시 중도금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추후 안내(알선)하는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선정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중이라도 계약자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시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신용불량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복수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 상황의 변동 또는 금융기관의 여신정책 등에 따라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특성(업권 등) 및 대출 방식에 따라 계약자의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시공사 또는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 잔금 및 중도금 대출원금을 완납하거나 대출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기타 대출조건은 대출금융기관의 심사 및 기준에 따릅니다.
- 준공 후 담보대출 전환 시 DSR 적용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 시에는 확정금리 이자후불제 조건에 따른 별도의 이자 지원 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당 대출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후, 미상환 시 개인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관련 내용은 단순 참고사항이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및 다호실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실행에 필요한 계약 관련 정보를 대출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양천구)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해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불법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문제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은 전매행위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30년 12월 예정 (향후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준공예정일이 입주예정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그 연장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지체보상금 등의 청구, 공급계약의 해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또는 법원 명령 발동, 주요 감염성 질병(코로나19 등)의 확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준공 및 입주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공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규정을 사업주체 등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준공 및 입주지연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 해지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직접 진행하는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단,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보수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제세공과금, 관리비 및 부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 제반 관리상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전점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5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실은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소유권의 범위는 본 계약에 따른 분양대상인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 부대시설에 한하며, 이를 제외한 시설의 소유권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시설의 분양·기부채납 여부 등에 따라 귀속됩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건축허가 도면 기준(2026년 7월 15일)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 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건축허가일은 2024년 4월 30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통지로서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되며,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은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사업 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인근 기존 건물의 위치와 높이를 포함한 규모,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옹벽, 배수시설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 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교차로, 차량 진·출입구, 버스정류장, 교통안전시설 등은 관계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오목공원, KT IDC 목동센터가 인접하여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 시설(도로, 보도, 가로등, 신호등 등 공공기반시설 포함)에 대한 사용과 관리는 관계기관에 이관될 수 있으며, 사업지 내 업무시설(공공기여) 등은 관계기관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고, 관계기관의 공사계획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조성 계획, 설치내용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에는 중수조, 102동 정화조, 103동에는 정화조 배기덕트 및 냉운수기 연도가 계획되어 있으며, 각 동 지붕층에는 탈취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화조 및 중수조 관련 설비(연도, 배기팬, 배기덕트, 탈취기 등)로 인해 인접 실은 소음, 진동 및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 또는 위탁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관리단이 구성된 이후에는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 초등학교 - 본 건축물은 서정초등학교 통학 구역입니다.(향후 준공시점에 통학구역 조정 확정 예정)

		• 중학교 - 해당 건축물은 강서양천 3학교군 배정지역으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특정학교에 배정될 수 없으며, 배정당시의 학생수와 학교의 학생 수용 여건 등에 따라 타학교군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 방법은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실은 차량 통행, 단지 주차장 외벽 키네틱 아트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분리수거소의 악취, 분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발전기용 급배기 D.A 가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호실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 및 주변 단지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구조 및 마감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 형태와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102동의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Sky Vista, Sky Guest, Sound Chamber, Sky Otium 등)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동 및 실에서는 CLUB CLOUD(스카이라운지) 내부 조명 및 외부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커뮤니티 전용승강기 노대의 경우,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 및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23층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며, 해당 공간은 입주민의 편의시설 또는 전용공간이 아닌 비상시 피난을 위한 시설입니다. 피난안전구역의 관리 및 운영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 동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및 인명 구조를 위한 공간이 설치됩니다. • 각 동 옥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된 고가수조는 수질, 위생, 누수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높이제한에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SMC(시트 성형 복합재) 패널 고가수조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가수조가 변경될 경우 승강기 기계실 위치가 하향되어 최상층 호실은 소음,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CLUB CLOUD, EDU LOUNGE),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공공기여), 창고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자전거 보관소, 단지 주출입구, 9층 설비공간 등과 인접한 실은 소음, 불빛, 분진, 수증기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BIPV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배기팬,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헬리포트 유도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 층의 층고와 주동 승강기 기계실 및 고가수조의 층고는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호실과 승강기 기계실 간의 이격거리는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근접하여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계단은 실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실과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공공기여), 창고시설, 공용부 등 일반관리비는 전체공동으로 부과되며 오피스텔/비주거(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공공기여), 창고 시설, 공용부) 구분 또는 전용면적비(또는 계약면적비)에 따라 분배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위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는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우수한 통신품질 확보를 위해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1. 지상 41층: EPS/TPS 3개소(101동, 102동, 103동) 2. 지상 28층: EPS/TPS 3개소(101동, 102동, 103동) 3. 지상 15층: EPS/TPS 3개소(101동, 102동, 103동) 4. 지상 6층: EPS/TPS 3개소(101동, 102동, 103동) 5. 지상 2층: EPS/TPS 3개소(101동, 102동, 103동) 6. 지하 2층: EPS/TPS 3개소(101동, 102동, 103동) 7. 지하 5층: EPS/TPS 3개소(101동, 102동, 103동) • 단지 내 보도 및 차도는 비상 상황에서 소방차 등의 비상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이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 계획은 인허가 조건 및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 9층 옥상에는 설비공간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비의 운영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유지관리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차폐구조물, 인조잔디의 형태, 위치, 재질 등이 변경 또는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관리단으로 시설물 관리업무 인계 후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 보건, 수질관리,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이나 해충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 오피스텔 면적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등에 대해, 계약자의 계약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관 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실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키네틱 아트,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 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지상 9층 필로티 구간)의 주요 마감재는 석재 및 금속으로 계획되며, '발코니와 같은 돌출부' 및 '기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석재뿔칠 또는 페인트 도장 마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주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 비율 및 적용 층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적용된 대형옥상장식물, 포디움부의 타공금속, 키네틱 아트 등의 유지보수비용은 계약자들의 각각 대지권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상 3층~지상 8층 건축물 입면에 부착되는 키네틱 아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위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면적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차량진입 램프와 연계하여 계획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크기, 형태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실의 조망, 일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명 설치에 따른 빛 산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단지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시공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옥상 및 외벽에는 경관조명, 조형물 및 BI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실의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눈부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빗공해 심의 결과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운영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금속마감, 장식구조물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빛 반사, 눈부심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에 유리마감재 및 태양광 BIPV가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하고 위치, 면적, 수량 및 디자인은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실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포디움부(단지저층부 3~8층) 외벽에 적용되는 키네틱아트, 유리마감재, 타공금속 및 BIPV(태양광발전설비)는 인허가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설치를 위한 구조물 또는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어 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포디움부 외벽에 키네틱 아트(현재는 금속재질 키네틱 아트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와 키네틱 아트 전용 조명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바람에 따른 작품의 움직임으로 인해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빗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적용되는 대형 옥상장식물, 포디움 타공금속, 키네틱 아트 등 특화 외관 요소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된 사항으로 입주 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 키네틱 아트(현재는 금속재질 키네틱 아트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에는 타공금속의 조명설치로 인한 외관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층 옥상에는 설비공간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비의 운영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유지관리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차폐구조물 및 인조잔디의 형태, 위치, 재질 등이 변경 또는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에 상부구조물 옥상마감은 인조잔디로, 추후 시공 시 인조잔디의 형태, 위치, 재질 등이 변경 또는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용 시설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공공기여) 등에 인접한 실은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보일러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냉각탑, 설비 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냄새 및 진동·열기·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오피스텔 부대시설(CLUB CLOUD, EDU LOUNGE)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오피스텔 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단은 오피스텔 관리단과 근생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공기여시설의 관리단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소 및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유지·관리됩니다. • 부대시설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오피스텔 PIT)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7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 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 사용 요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관리 수입은 관리비 회계에 편입되어 오피스텔 부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 시공성 및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CLUB CLOUD(스카이라운지) 옥외 공간 일부에 하부 실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 배관 및 우수입상관 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은 입주민 전용시설이 아니며, 일부 외부 고객에게 회원권을 별도로 분양 및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공기여 시설은 오피스텔과 별개의 시설로 분양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지하 3층 ~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의 공간계획과 지하 3층 ~ 지하 1층의 운동시설, 지하 3층의 창고시설의 공간계획은 시공 진행 과정에서 공간활용성, 동선의 편리성, 운영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 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 로비와 연결되는 지상 1층 및 지상층(3층~9층)의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오피스텔 각 호실에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 등 기후에 따라 동파가 발생 가능한 구간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주거와 비주거 또는 공동구역 등 영역별 구분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주거/비주거 구분하여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실은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 계단, Top Light, 자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 실은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층, 옥외공간에 위치한 기계실, 환풍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와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 운영관리시스템(FMCS)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무상 제공되며, 3년 이후부터는 유상 전환됩니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스템이 적용되는 범위 및 시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 관리(옥상, Club Cloud 등)를 위해 운영/관리 인력들이 주동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재실은 오피스텔/오피스텔 외 시설이 통합된 방재실로 운영됩니다. 운영,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발전기 유류탱크 용량에 따라, 관할 소방서 신고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 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승강기 카드키 제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택배 및 우편물 등의 수취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욕실 및 복층형 오배수 배관은 인허가 조건에 의해 층상배관 공법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층은 성능개선, 인허가 협의 결과 또는 시공 여건 등에 따라 층하배관 공법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연돌현상 대비를 위하여 지상 1층 및 3~9층은 승용승강기 홀 부분에 추가 출입문이 계획될 예정이며 이는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 및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콘텐츠	• 본 홍보물에 포함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식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과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Sky Vista, Sky Guest, Sound Chamber, Sky Otium, Edu Lounge)은 시설 사용 개시 후 2년간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업체가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입주인 관리비로 부과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간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동력용수광열비 등은 입주인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력용수광열비 등의 부담은 관리단 구성 전까지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담되나, 관리단 구성 이후에는 관리단집회 결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인 전체의 공동관리비로 부과되거나 사용자(수익자) 부담으로 부과 예정이오니 계약자께서는 계약 시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Sky Vista, Sky Guest, Sound Chamber, Sky Otium, Edu Lounge)은 이용 시 개별 비용이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이며, 사업주체 및 관리단과 전문위탁관리업체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 개별 실에 관리비로 부과되며, 전문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 운영 종료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공된 공사 부위, 추가 설치된 전자제품 및 집기/비품 등은 부대시설 내에서 철거 및 반납됩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의 각 시설들의 명칭(Sky Vista, Sky Guest, Sound Chamber, Sky Otium, Edu Lounge)은 사업주체 및 관리단과 전문위탁관리업체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은 실 시공 시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골조 사이즈 및 위치, 창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 내 가구 디자인, 수량 및 배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내 장식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과 집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102동 최상층에는 오피스텔 부대시설인 CLUB CLOUD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동 및 실에서는 CLUB CLOUD 내부 조명 및 외부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LUB CLOUD 이용자들로 인하여 인접동 실에서는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오피스텔 1,206대, 근린생활시설 101대 등 총 1,450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주차 구획의 위치 및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헬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상주차장은 지상 3층 ~ 8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상주차장 층수 및 주거 동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 철골조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며, 설치 위치·수량 및 운영방법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주차장 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여건 등을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52개소(급속 20대, 완속 132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입구 및 지상 3층의 주행로의 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지상 4~8층은 높이 2.3m로 택배 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상 3층~8층 주차장은 전 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 시설의 주차 출입구는 각각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지상주차장은 2개소의 진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1개소는 방문객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객 진출입구 인근에는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 주차구획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출입구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지상 3층 쓰레기처리장, 재활용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지상 1층 쓰레기처리장 설치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복층형 호실 27실 (198CD, 202BD, 203AD)은 실당 2면에 대한 지정주차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주차여건 등을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기여, 창고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대지지분은 오피스텔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오피스텔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은 오피스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업종 배치 및 브랜드 입점)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업종 배치 및 브랜드 입점)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쓰레기처리장 및 재활용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지하층 주차장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자는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MD(업종 배치 및 브랜드 입점)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MD 계획 수립 권한은 사업주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진행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등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의 용도 변경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 또는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주차장 이용 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외 시설의 주차 구획은 오피스텔과 분리되어 있으며, 오피스텔과 주차 출입구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호실	평면	• 본 오피스텔은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실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전용실의 침실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 (복층형 침실의 천장 높이는 2,450mm입니다). • 입주 시 실 내 침실별 가구(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사전에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현관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승강식 피난구실, 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세탁기 등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일부 타입의 호실 평면의 경우에는 세탁기 및 건조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도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 및 설비는 관계법령,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적용되며, 사용 자재, 공법 및 설비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과정 등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모두 소음목표기준 4등급(49dB 이하)을 적용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전 오피스텔 호실수의 2% 이상을 대상으로 계약자에게 별도 고지없이 목표기준 충족 여부를 실측합니다. • 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층형 호실 및 옥외공간 타입 하부 실의 천장에는 상부 실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층형 호실 및 옥외공간 타입 하부 실에서는 상부 실 옥외공간의 배수관 설치로 인해 실내 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타입 상부 실은 우천 시 옥외공간 상부(복층 야외욕조 포함)에 설치된 캐노피에 의한 빗물 튕과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층형 호실 야외욕조 및 욕조용 수전은 동절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배관과 수전 내부의 잔류수가 동결되어 동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절기 및 장기간 미사용 시에는 사용 후 반드시 배관 및 수전 내부의 잔류수 배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10층~22층에는 관련 법령 및 성능위주설계 심의 결과에 따라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창호의 형태 및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10~22층(피난안전구역 하부층)의 일부 호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 창호 및 외벽에 소방관진입창을 설치 및 표시하여야 하므로, 호실에 따라 외부 조망 시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결과에 따라 배연창이 설치되며 배연창의 설치 위치나 개소는 미관 · 사용성 · 배연창설비 · 창호성능 등과 인허가청 및 소방서, 소방본부 협의, 소방시뮬레이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층형 호실의 경우, 방화문, 방화셔터 및 수동조작함이 설치됩니다. • 복층형 호실의 방화문의 디자인 및 문손잡이는 인허가 협의 또는 소방서 협의, 실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층형 호실의 계단은 인허가 협의 또는 피난 시뮬레이션, 안전성 확보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코니 확장 대상이 아니므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위반되는 임의의 발코니 확장, 구조변경 또는 불법 증축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114B 타입 세탁실은 발코니에 설치되므로 바닥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난방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마감재 손상 및 보관 물품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로 저감을 위해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내부 폭 및 유효공간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

		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또는 승강식 피난구실 천장에 덕트, 전열교환기,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 시에는 승강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승강식 피난구 설치 실은 비상 시 승강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승강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창호 개폐에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돌출 발코니 호실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돌출 발코니 호실의 경우 각 실과 돌출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실 단열 및 배수 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돌출 발코니 호실은 발코니 시공 위치에 따라 거실 혹은 침실 등 특정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	• 호실 타입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실은 외벽 마감재의 시공 상황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는 일부 실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실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및 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한 내외부 습도차로 인해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호실 개별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발코니와 실내 사이는 MOVABLE WALL SYSTEM이 설치되며, 개폐를 통해 공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철제문의 경우,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동급 이상(디자인, 문짝 두께, 문틀, 경첩의 형태, 하드웨어, 마감 등)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옥외공간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실 우수 유입 및 하부 실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돌출 발코니	• 돌출 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돌출 발코니 출입을 위한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돌출 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117C-T1, 118C-T2, 119A-T1, 120A-T2, 120A-T3의 돌출 발코니는 방수, 몰탈, 타일 등 건축 기본마감까지 시공되며, 이 외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입주자는 돌출 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 실 및 하부 실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돌출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바닥 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홈구멍) 또는 벽체 전면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 돌출 발코니 공간에는 벽체의 BIPV 및 커튼월록 마감으로 인해 별도의 전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가구 및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마감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에 적용되는 마감 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타입별 무상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개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실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호실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및 변색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 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조기를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서 사용할 경우, 온도 및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마루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리류는 자재 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과 동급 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류는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멜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고,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적용되는 타일은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배관 및 단열 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공사 시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재료분리대, 몰딩 등이 추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타입 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됩니다. • 일부 타입의 공간 옵션에 따라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웅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호실 내 욕실 벽체는 조적벽 대신 건식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벽체 두드림 시 발생하는 소리는 하자가 아닙니다. 건식공법 적용 시 수전, 도기 등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디자인과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추가적인 욕실 시공(바닥방수, 바닥난방, 타일마감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추가 시공 시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착수 전에 인접 실 및 하부 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복층형 호실(203AD, 202BD, 198CD)의 계단은 인허가 및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층형 호실 2층의 방화문, 문틀, 방화셔터, 자동폐쇄장치, 안내문구는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화셔터를 구동하기 위한 수동형 조작함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시트패널에는 들뜸하자 예방을 위한 프로파일 설치될 수 있습니다.
전기 기계 설비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 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복층 일부 세면대 제외)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복층 하부층 가족욕실 세면대 제외)이 설치됩니다. • 호실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위생 및 난방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 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루버는 무전원 자동루버로 설치되며, 루버 근처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 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23층, 옥상층에 제연을 위한 급배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벽 등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 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공간 옵션에 따라 침실이 대형 현관창고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 제어될 수 있습니다. • 자이오펙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호실별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호실 평형, 타입, 옵션,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복층형 호실에는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 이외 별도 추가의 난방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공간 제약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능위주설계 심의 조건에 따라 9층 구간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 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에는 리모컨은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 제공됩니다. • 인허가 조건에 의거, 호실별 현관문 상부에는 유도표지판이 설치되며, 복층형 실의 경우 현관 및 2층 계단 출입문 상부에 유도표지판이 설치됩니다. • 현관 신발장 상부 또는 일부 가구 상부장 수납함 내부에 조명 SMPS함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습니다. • 복층형 호실 거실의 걸지 커튼(실내쪽)은 전동형으로 제공되며, 레일과 모터, 전원과 통신장치가 설치되나, 커튼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복층형 호실 등 기준층과 PD 위치가 다른 경우 하부층 실 천장 내부에 위생 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및 103동 엘리베이터 전실 PS(파이프 샤프트) 내부에 정화조 연도 및 냉온수기 연도(103동)가 설치되며, 101동 엘리베이터 전실 PS(파이프 샤프트) 내부에 중수조 연도가 설치됩니다. • CLUB CLOUD에는 하부 실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시경 점검으로 인해 묶음 배관은 불가합니다. • 호실 내 전열교환기는 시스템 공기청정기 장비 본체에 내장된 공기질 센서에 의해 운전되며, 전열교환기 가동을 위한 별도 센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형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일반형(벽걸이형, 스탠드형)은 벽체 매립배관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 공기청정기,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관리를 위한 설치 시설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실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외부조망사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실제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오피스텔 분양보증(사용검사 전)을 득한 건축물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 포함)까지	1,453,709,600,000	제 01222026-105-00002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오피스텔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해당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니다.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줍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분양광고에 따른 계약자 모집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오피스텔 또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오피스텔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합니다)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접수일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 본 공사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변경[전자주소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부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의 단체를 구성하여 최종 허가도면과 다른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오피스텔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인 ㈜아이코닉과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가 분양사업자가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계약체결을 요하지 않으며, 공급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공급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탁자는 공급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공자인 지에스건설(주)가 부담합니다.
-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탁자와 무관한 공급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공급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사업시행과 관련한 필수적인 계약에 관한 승계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법률상 사업시행자로서 해야하는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공급계약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바, 위탁자가 임의로 공급계약자와 체결한 각종 합의서, 약정서 등은 수탁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신영부동산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190099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주된 영업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 사업 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4, 924-3, 924-5
- 공급대상물의 지목 : 대
- 공급대상물의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대상물의 규모 : 지하 6층 ~ 지상 48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 : 상대보호구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 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시공업체(지에스건설(주))/분양대행사(주)건물과사람들/주)씨에스엠플랜닝)

- 분양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해당사항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별도)	법인등록번호
전기/소방/통신	(주)두경씨엠	2,100,000,000	110111-0932213
건축/토목/기계/조경	(주)두가씨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922,000,000	110111-1665665
	(주)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840,000,000	110111-4818691
	천진종합건축사사무소(주)	840,000,000	110111-7749059
	(주)동해종합기술공사	398,000,000	110111-2462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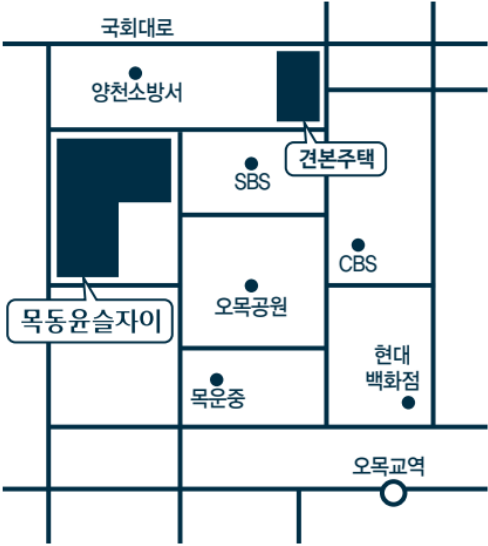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 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110111-7126835
위탁사	(주)아이코닉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42(잠실동)	110111-5861566
시공사	지에스건설(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110111-0002694
분양대행사	(주)건물과사람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0, 201호, 202호, 203호, 205호(서초동, 강남역 푸르지오시티)	110111-1826118
	(주)씨에스엠플랜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0길 9, 401호(역삼동)	110111-2726416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반드시 본 분양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
	운영시간	10:00 ~ 17:00

	운영기간	분양종료 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833-6515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s://xi.co.kr/MDX